KOSHA Guide C-43-2023

- (3) 철근을 운반할 때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.
 - (나) 철근 운반 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m이상 이어야 한다.
 - (다)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.

5.2 가공

- (1) 철근가공 작업장 주위는 정리·정돈 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원 이외는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.
- (2) 가공 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해머로 절단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(가) 해머 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지, 사용중 해머가 빠질 위험이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- (나) 해머 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다) 절단기의 절단날은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(4) 기계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철근 기계절단 작업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여야한다.
- (나) 철근 절단시 철근의 탄력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해 철근 절단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- (다) 절단 기계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5)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가) 가스절단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에게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.